

창원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101562 판결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101562 판결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소1076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숙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변론종결 2024. 7. 26.

판결선고 2024. 10. 1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소1076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6행의 “계약당일”을 “계약 당일”로, 14행의 “의무”를 “의무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13행의 “보낸 점” 다음에 “, ④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전세사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측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증인신문독취서 6면), 피고가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국세,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이진석, 판사 김상욱